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79
----------	-------

발의연월일 : 2026. 2. 19.

발 의 자 : 박해철·이주희·홍기원
김승원·정진욱·김정호
김태선·김동아·임미애
박희승·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방식,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임원의 임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 사업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임원의 임기)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기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기를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9조의2(임원의 임기)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u></p> <p><u>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u></p>